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254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5.

발 의 자:이만희·구자근·김기현

김도읍 • 김상훈 • 노용호

서병수 · 서일준 · 성일종

이주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책임 기관별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·연계하여 국민, 기업 등에 통 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피해 예측, 초기 의사결정 지원,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재난안전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필요함.

이에 재난안전데이터를 정의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·연계·분석·활용·공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며, 이를 관리·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3호 및 제74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"재난안전데이터"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 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.

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4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연계· 분석·활용·공유·공개(이하"수집등"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・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,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,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

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3. "재난안전데이터"란 정보처
	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
	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
	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
	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
	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74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의 수
	집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
	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
	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
	의 수집 • 연계 • 분석 • 활용 •
	공유·공개(이하 "수집등"이라
	한다)를 하여야 한다.
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
	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
	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
	시스템을 구축・관리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
	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
	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

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
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
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
터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, 데이
터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
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데이
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.
⑤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
터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 및
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